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56 발의연월일: 2022. 5. 19.

발 의 자:정우택·백종헌·강기윤

하영제 · 지성호 · 구자근

윤영석 · 조경태 · 황보승희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 등에 지장이 없게 하기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격리소 등을 제외한 병원의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되지 않고 있는데「의료법」에 따라 지정된 전문병원 중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요는 거의 없어 학교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이러한 전문병원이나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정신병원이 학교경계등으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될 시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생들의 등·하교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200미터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 병원의 설치를 금

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.

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의 범위 안에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항 본문 중 "교육환경보호구역 내"를 "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의"로 한다.
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, "교육환경보호구역"을 "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교육환경보호구역이"를 "구역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"제9조"를 "제9조제1항"으로, "시설"을 "시설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"로, "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"를 "구역내에서의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"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"를 "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

서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 알코올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"를 "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정신병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 이미 설치된 정신병원 또는 지정된 전문병원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	제5조(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
등) ① ~ ⑦ (생 략)	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	8 <u></u>
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	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의
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	
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	
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	
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	
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	
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	
두어야 한다. 다만, 교육지원청	<u>.</u>
이 없는 경우 시·도위원회의	
심의를 받는다.	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	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교육감은 학교경계등으로부
	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
	안의 지역을 제9조제2항에 따
	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
	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 <u>.</u>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③</u> 교육감은 <u>제2항</u> 에 따라 학	<u>④</u> <u>제3항</u>

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설정·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있다.

제8조의2(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)

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<u></u>	
육환경보호구역 및 제9조제2항	
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	
- 구역	
 ⑤ 제1항 및 제2항	
<u>.</u>	
1. ~ 3. (현행과 같음)	
<u>⑥</u> 제1항 및 제2항	
<u>.</u>	
제8조의2(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)	
①제9조제1항	
	
시설 및 같은 조 제2항에	
해당하는 시설	
구역 내에서의	

② (생략)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금지행위 등) (생략)

<신 설>

제16조(벌칙) ① 제9조를 위반하 제16조(벌칙) ① ------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 의 금지행위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 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 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 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서 「의료법」 제3 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 알코올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문병원을 설치 또 는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 만,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 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

--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----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